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4호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6 2 7 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 1 6 5 5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5
- 공 고 제 1 6 5 7 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공 고 제 1 6 5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23
- 보 건 소 공 고 제 7 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7
- 보 건 소 공 고 제 7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28
- 보 건 소 공 고 제 7 3 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29

고 시

- 고 시 제 1 1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39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627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1.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공공조형물의 건립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절차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건립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833, FAX 453-28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최근 공공조형물 건립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절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부패방지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 이행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건립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4-305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 등을 말한다), 환경시설물(분수대, 폭포 등을 말한다), 조형시설물(조각·공예 등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 시 고려사항)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관련 법령 등 적합여부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洞)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 1회 이상의 상태점검

②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건립주체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 화	
	주 소		대상자와의 관 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주요업적개요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립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라.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8.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설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설주체		관리기관	
건설취지			
건설대상 설 명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 7")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05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관 련 기 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244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4. 9. 15.

주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15일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4.(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안*일	인천84바**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6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신*진	인천99아**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7번길24-2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인	인천81바**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1번길30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신*진	인천99아**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7번길24-2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윤*기	인천86바**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440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2)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657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0.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안전지원계획 수립 및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안전교육, 경비지원,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041, FAX 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9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3조)
- 안전지원계획 수립 및 안전모니터링 등 (안 제4조 ~ 제5조)
- 안전교육, 경비지원, 지도·점검 등 (안 제6조 ~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남동구 조례 제2019-1657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확보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 점검 등)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6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2)에 갖추어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
 - 명 칭: 고잔동372-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소로1-7호선)
3. 사업규모: A=2,746.0㎡, B=10.0m, L=230.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계	잔여면적	소 유 자		관계자			비고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372-26	답	64.0	64.0		64.0	-	한**	서울 양천구 목동 *** *****아파트*****				
2	"	372-27	도	51.0	51.0		51.0	-	남동구청	공				
3	"	372-28	답	61.0	61.0		61.0	-	삼****업(주)					
4	"	372-24	장	576.0	7.0	21.1	28.1	547.9	한**	서울 양천구 목동 *** *****아파트*****				
5	"	372-13	답	1,210.0	337.0	143.1	480.1	729.9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아파트*****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안산고잔*차*****	임진군 **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	근저당권	
6	"	379-5	전	1,157.0	64.0	38.2	102.2	1,054.8	민**	고잔동 ****				
									신**	고잔동 ****				
7	"	379-4	전	2,182.0	680.0	142.4	822.4	1,359.6	강**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 *****호	인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저당권	
8	"	372-7	전	1,854.0	766.0	89.9	855.9	998.1	오**	고잔동 ****				
9	"	372-11	전	1,950.0	212.0	33.3	245.3	1,704.7	송**	남동구 장도로 ****	서울** 조합	서울 강서구 양천로 *** (등촌동)	근저당권 저당권	
10	"	586-2	도	3,861.0	22.0		22.0	3,839.0	건설부	국				
11	"	372-10	장	1,467.0		7.8	7.8	1,459.2	삼****업(주)	남동구 고잔동 *****	**은행	**동지점	근저당권	
12	"	372-16	장	1,936.0		5.7	5.7	1,930.3	김**	남동구 고잔로 ***				
									오**	남동구 고잔로 ***				
소 계				16,369.0	2,264.0	481.5	2,745.5	13,623.5						

■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수량 (개소)	비고
	구	동							
1	남동	고잔	374-2	EGI웬스	출입문	웬스	583.6		
				계근대	철재			1.0	
				기타	집계	배전반		2.0	
2	남동	고잔	372-32	철망+강관	출입문	웬스	118.8		
				화단	라일락			3.0	
					백일홍			3.0	
					기타				
				컨테이너	휴게소			1.0	
					창고			1.0	
3	남동	고잔	372-16	PE제품	저장시설	Φ1500		8.0	
						Φ800		1.0	
				모터기				1.0	
				기계장치	냉각수			1.0	
				저장소	LPG	바닥기초	1.3	1.0	
4	남동	고잔	372-24	콘 블록	쓰레기장		8.8		
				철재	웬스		11.0		
5	남동	고잔	372-10	철재	출입문	웬스	33.3		
				CCTV				1.0	
				수도계량기				1.0	
6	남동	고잔	372-13	EGI웬스	출입문	웬스	258.0		
				철재	계근대			1.0	
				컨테이너	사무실			2.0	
				화장실				1.0	
7	남동	고잔	372-7	EGI웬스	출입문	웬스	175.0		
8	남동	고잔	372-7	EGI웬스	출입문	웬스	78.0		
9	남동	고잔	376-1	철재	출입문		14.0		
10	남동	고잔	376	철재	웬스		126.5		
11	남동	고잔	377	메쉬웬스	출입문		18.0		
				컨테이너	휴게소			1.0	
				컨테이너	창고			1.0	
12	남동	고잔	409-34	천막+강관	창고		168.0		
				컨테이너	사무실			1.0	
				컨테이너	창고			2.0	
13	남동	고잔	408	철재	웬스	출입문	514.0		
				천막+강관	창고		135.0		
				컨테이너	사무실			1.0	
				컨테이너	창고			1.0	
소 계							2,243.3	36.0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68-3	NO.0+005.30	우측	8716H 701	한국전력	소로1-7호선
2	남동구 고잔동	368-3	NO.0+005.30	좌측	8716H 713	한국전력	소로1-7호선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72-13	NO.0+016.90	우측		한국통신	소로1-7호선
2	남동구 고잔동	368-3	NO.0+007.30	좌측		한국통신	소로1-7호선

상 수 맨 홀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수 량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68-3	NO.0+005.30	우측	1	소로1-7호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9. 26.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9. 11. ~ 2019. 09. 2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6- 020011 7	국1015간석점	김○철	석산로 166, 상가2동 107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8.31	2019.09.26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9. 0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09.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0. 04.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9. 18. ~ 2019. 10. 0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04-01 99852	여가	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5, 1층 ,2층일부(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03	2019-10-04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0. 0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19. 09.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3호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 9.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사 업 비 : 800,000천원(2019년 기준)
 - ※ 매년 국시비 지원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접수기간 및 장소(신청서 교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9.20.~9.29.(10일) (09:00~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제출 (공휴일 및 우편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서식교부 : 남동구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소식과알림-고시/공고) 참조
- 장 소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3. 자격요건

-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시 소재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 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제출서류

- ① 수탁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대표자 경력사항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1부(소정양식) (법인에 한함)
- ④ 위탁협약서 표준서식 1부
- ⑤ 위탁운영 기간 동안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소정양식)
- ⑥ 급식 및 영양관련 업무 실적(최근 3년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⑦ 서약서1부(소정양식)
- ⑧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1부(소정양식)
 - ※ 상기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 ※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 1부(USB 저장 제출)

5.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 심의기준 및 배점(안)

구분	계	서류평가	기술평가
		○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사업추진실적 ○ 인력관리 ○ 시설 및 장비 운영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효과성 ○ 발전가능성
배점	100	30	70

- 심사일시 및 장소 : 접수 후 개별통지
- 선정방법 :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 항목별 평가 후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공고 및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 기관(단체)만 심사, 심사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결정통지 : 결정된 기관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고용(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센터에 고용된 직원) 및 사업 승계
- 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접수 된 서류 중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위탁관련 사항은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2)으로 문의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 관·단 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기관(법인)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아래는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를 총괄 관리할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확인을 위하여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센터장 (성명)	생년월일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 기관(법인)명칭 :

2. 기관(법인)소재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5. 구성원 수 :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설립일자(년월일)	연혁	비고

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기구 및 운영부서

(2/2)

9. 기관(법인) 재산조서

가. 부동산 현황

종별	명칭	소재지	규모(m ²)	평가액(백만)	비고

나. 동산 및 출연금 현황

구 분	명 칭	평가액(백만)	비고

다. 사업소득 현황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10. 공공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11. 기타(수상경력, 사회봉사 활동 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목표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운영방침

3. 조직 및 기구 구성계획

가. 인력확보 계획(자격증 소지자 확보)

나. 인력담당업무 배분계획

4. 세부사업 운영계획 (급식시설 등록·관리,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관리 계획)

가. 아래의 위탁사무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량을 계량화 할 것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자체평가 계획 (사업의 효과 및 발전 방안 등)

6. 과목별 사업예산의 산출 내역서

서 약 서

서 약 자	법인명		법인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상기 본인은 금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제출 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보건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남동구보건소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 기존 센터 근무 직원의 고용 및 사업 승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력 등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력 등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모집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고잔동)	2019.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13 (만수동)	2019.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15-3 (만수동)	2019.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15 (만수동)	2019.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고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18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8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40-18, 14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49 (수산동)	20110324	마을 고유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제명	2019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찬우물로 4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9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13 (만수동, 행복주택)	20091116	만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100번길 1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29 (논현동)	20091116	소래역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남로16번길 2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번길 22-9 (서창동)	2012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10번길 22-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9를 건물번호로 부여	